

의안번호	제 542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

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1월 6일

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542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1월 6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2017. 2. 여성발전센터 조직 폐지 예정으로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의 운영체제를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 대상 :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사무

나. 추진 계획

- 수탁기간 : 여성발전센터 폐지 ~ 2018.12.31. (약2년)
- 수탁기관 : 사회복지법인, 법률구조법인,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 - ※ 現 직영 : 여성발전센터 (2003.1.1. ~ 현재)
- 선정방법 : 공모 선정
- 위탁주요사업
 - 폭력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(365일 24시간 Hot line 운영)
 - 관련 기관·시설(폭력상담소·시설, 경찰, 의료기관 등)과의 연계
 -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
 - 기타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제반사무
 - ※ 위탁 기본 계획 별첨

○ **민간위탁 추진일정**

-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: '17. 1월
- 수탁기관 공모 및 접수 : '17. 1월~2월초
-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추진 : '17. 2월
-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: '17. 2월
- 위탁사실 공고 : '17. 2월

3. 참고사항

- **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및 관계 법령**

여성긴급전화 1366 총복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



충청북도
여성정책관

- '17. 2. 여성발전센터 조직 폐지 예정에 따른 -

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

- '17. 2. 여성발전센터 조직 폐지 예정에 따라 도 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함
- 센터장 신규 임용 및 상담원 자생력 확보 필요
- 상담서비스의 효율성 및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함
- ➡ 現 운영체계 : 도 여성발전센터 직영 (조직 폐지 전까지)

I 추진근거

-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6
-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조의4
-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~제7조
- 2016년도 여성·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(여성가족부)

II 現 운영현황

- 시 설 명 :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(직영 : 여성발전센터)
- 소 재 지 :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(여성발전센터 내)
- 시설규모 : 180m²(전화상담실 3, 면접상담실 1, 긴급피난처 1, 사무실 1)
- 운영인력 : 13명(전화상담원 10, 현장상담원 2, 긴급피난전담 1) ※자원봉사자20명
- 주요기능 : 가정·성폭력,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 및 긴급 지원
- 근무방법 : 365일 24시간 3교대

<1366 연혁>

- ▶ 1998. 1. 1 청주가정법률상담소에서 1366 개통
- ▶ 2000. 4. 1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위탁 운영
- ▶ 2001. 9. 1 청주 여성의 전화 위탁 운영
- ▶ 2003. 1. 1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직영 ※ 전국 16개 시도 중 13개 민간위탁 운영

Ⅲ 추진계획

1 위탁개요

- ① 사업명 : 「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」 운영
- ② 위탁기간 : 계약일로부터 2018. 12. 31.까지 (약2년)
- ③ 위탁사무 : 여성긴급전화 1366 충북센터 운영 및 사업 일체
 - 폭력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(365일 24시간 Hot-Line 운영)
 - 관련 기관·시설(폭력 상담소·시설, 경찰, 의료기관 등)과의 연계
 -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
- ④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< 위탁대상 >

- ◆ 여성권익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
- ◆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에 의한
 - 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**사회복지법인**
 - 「법률구조법」에 따른 **법률구조법인**
 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**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**

※ 신청 제외 대상 :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규 위반으로 시설폐쇄, 위탁취소 및 위탁 해지처분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

< 센터장 자격 >

- 수탁운영기관장이 도지사 사전 승인 받아 센터장 임면
- 센터장 임용자격 요건 : 다음 중 하나이상 충족 시
 - ▶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 - ▶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, 성폭력 또는 성매매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 - ▶ 가정폭력, 성폭력 또는 성매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, 성폭력, 또는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수 위탁조건

○ 現 센터 종사자 고용승계 원칙

- 수탁기관장이 도지사 사전 승인 받아 센터장 임면

○ 現 센터 공간 및 사무용 집기 인수 및 활용

○ 재원부담 : 국도비 지원액 이외의 소요예산은 수탁체 자체 부담

※ 단, 필요시 시설 사용료*(약5백만) 및 처우개선, 운영비 등 지원 검토

* 사용료 산출기초

- 연간사용료 : 재산평가액 * 대부요율(25/1000)

- 1,111,791원(1㎡당 가격)*180㎡ *25/1000 = 5,003,059원

【 인력 및 예산현황 】

구 분	소요인력		'17년 예산액	비 고
	現 : 13	위탁 : 14	576,954천원	
센터장	겸 직	1(신규)	도비 추가분 포함* (143,293천원)	※ 자원봉사자 20명
전화상담원	10	9		
현장상담원	2	2		
긴급피난처	1	2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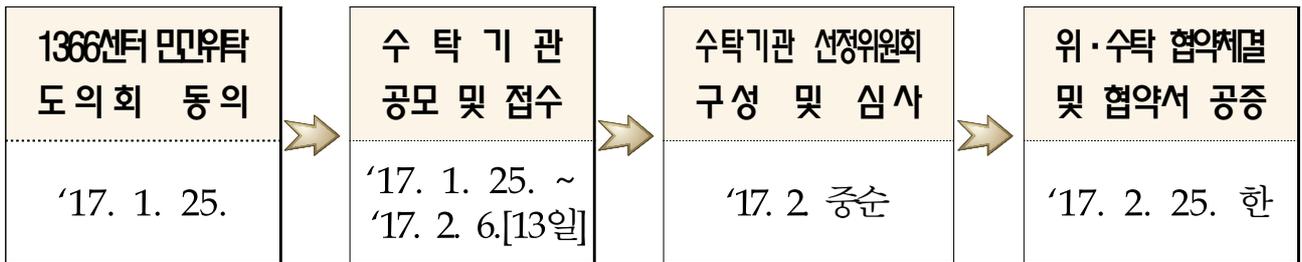
* 도비 추가분 : 현 상담원 퇴직적립금(2억 정도 소요) 지급 예정

【 타 시·도 추가 지원 현황 】 ▶ 평균 지원액 : 36,000천원

시도명	지원내역	예산액(천원)	비 고
충 남	- 처우개선비 : 10만/인 - 긴급피난처 운영비(물품구입비 등)	20,000	직영→위탁 (2003.1.)
제 주	- 인건비 보전	80,000	직영→위탁 (2005.1.)
대 전	- 종사자 특별수당 : 10만/인 - 긴급피난처 운영	20,000	
강 원	- 처우개선비 : 10만/인 - 퇴직금	45,000	
전 남	- 운영비 추가 지원	10,000	
경 남	- 네트워크관리 - 긴급피난 위기여성 생활보호 및 귀가조치	45,000	

2 위탁 추진일정

※ 추진 절차



① 1366충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: '17. 1. 25.(수)

② 수탁기관 공모 및 접수 :

- 공모기간 : 2017. 1. 25.(수) ~ 2. 6.(수) [13일간] / 도 홈페이지
 - ※ 1차 공모시 신청기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(8일)
- 방 법 : 충북도청 여성정책관 직접 방문 접수(근무시간내)
- 제출서류 :
 -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 - 법인현황(설립허가증 사본, 정관, 등기부등본, 인감증명 등)
 - 단체현황(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및 정관 또는 회칙 등)
 - 서약서
 - 기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자료

③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▶ 별도 계획 수립 시행

- 기 간 : 2017. 2. 중순
- 구성인원 : 6~9명 (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)
- 임 기 : 수탁기관 심사·선정 완료시 자동해산

- 선정기준 : 법인(단체)의 수탁능력 및 공신력, 사업운영 실적, 사업계획의 타당성, 재정운용, 지역사회 등 협력관계 등
- 선정방법 :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개 법인(단체) 선정

4 위·수탁 협약서 체결 및 공증

- 일 시 : 2017. 2. 25. 한
- 협약체결 : 도지사 ↔ 수탁기관 대표이사

[협약내용]

- ❖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
- ❖ 위탁계약기간
- ❖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- ❖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
- ❖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- ❖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- ❖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IV 행정사항

- **1366센터 운영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** : 2017. 1. 25.
- **공고 및 접수** : 2017. 1. 25. ~ 2017. 2. 6. [13일]
- **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** : 2017. 2. 중순
- **위·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서 공증** : 2016. 2. 25. 한
- **위탁사실 공고** : 2016. 2. 25.
- 기타 무기계약, 퇴직 정산 등 : 여성발전센터

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】

제4조의6(긴급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
 2. 관련 기관·시설과의 연계
 3.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
 4.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(이하 "피해자등"이라 한다)의 임시 보호
-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】

제1조의4(긴급전화센터 설치·운영의 위탁) 법 제4조의6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 다만, 제3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2. 「법률구조법」에 따른 법률구조법인
3.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국어 상담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
4. 그 밖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【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】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
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)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④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,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 등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협약체결등)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·수탁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.

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,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